

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5 선고 2020나2007130(본소), 2020나2007147(반소) 판결
[임금 · 구상금 청구의 반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0. 12. 15 선고 2020나2007130, 2020나200714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8 선고 2017가합572020, 2018가합589100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 1. A

2. D

3. E

4. F

5. J

6. K

7. L

8. M

9. O

10. T

11. Z

12. AB

13. AD

14. AF

15. AJ

16. AN

17. AO

18. AP

19. AQ

20. AR

21. AT

22. AV

23. AW

24. AY

25. BC

26. BF

27. BG

28. BK

29. BL

30. BM

31. BN

32. BP

33. BU

34. BW

35. BX

36. BY

37. CE

38. CF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기

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명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 CL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태평양

담당변호사 이형석, 윤여형

제1심판결 [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11. 28. 선고 2017가합572020\(본소\),](#)

[2018가합589100\(반소\) 판결](#)

변론종결 2020. 11. 24.

판결선고 2020. 12. 15.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원고(반소피고)들의 부담으로 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들에게 제1심판결 별지 1 본소 청구금액표 중 '청구금액'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반소 청구취지

원고들은 피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2 반소 청구금액표 중 '차액'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"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."는 설시를 추가하는 외에는,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[민사소송법 제420조](#)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박영재 판사 박혜선 판사 강경표